

어촌계의 소득 격차와 변화에 관한 연구

옥 영 수*

A Study on the Income Inequality among the Fishing Communities in Korea

Ock, Young-Soo*

< 목 차 >

I. 서 론	5. 발전정도별 어촌계 소득격차 변화
II. 소득 불평등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IV. 상하위 소득 어촌계의 변화 고찰
1. 로렌즈곡선과 지니계수	1. 상위 50개 어촌계의 변화 추이
2. 대수편차평균(MLD)	2. 하위 50개 어촌계의 변화 추이
III. 소득 불평등도 분석 결과	3. 최상하위 10개 어촌계의 변화 추이
1. 어촌계 평균 소득 분포 변화	V. 결론 및 정책함의
2. 시도별 어촌계 소득격차 변화	참고문헌
3. 종사유형별 어촌계 소득격차 변화	Abstract
4. 입지유형별 어촌계 소득격차 변화	

I. 서 론

어촌계가 설립된 것은 1962년 수협법에 의해서였다. 당시 어촌계는 전근대적인 생산구조 하에서 소득수준이 매우 열악한 연안어촌민에게 소득증대, 어촌조직의 활성화 등을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 전국 연안에 자생적으로 조직되어 있던 어업공동체를 기반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이후 어촌계는 연안어촌의 대표적인 조직으로서 우리나라 어업생산의 기본적인 하부조직이 되어 왔다.

접수 : 2008년 9월 18일 최종심사 : 2008년 11월 17일 게재확정 : 2008년 11월 22일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Corresponding author: 02-2105-4922, ysock57@kmi.re.kr)

한편 1960년대 이후 성공적으로 추진된 일련의 경제개발 계획의 영향으로 국가경제는 크게 성장하였고, 이는 국가 산업구조를 크게 변화시켰다. 이 결과 연안어촌에서의 어업구조도 크게 변화하였으나 연안어촌의 기본적인 하부조직인 어촌계는 이와는 관계없이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당초의 목적수행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수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¹⁾.

2006년 현재 전국의 어촌계수는 1,969개로서 어촌계원수는 157,117명이고 준계원도 19,935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어촌계원과 준계원의 가족을 모두 합한 어업인구수는 299,416명에 이르고 있으며, 가구수로는 163,747호가 된다. 이러한 어촌계원 및 준계원과 그 가족을 포함한 어업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어업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어업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촌계의 평균소득은 지난 20여년간 크게 증가하였다. 즉 1986년 어촌계 평균소득이 계원당 5,395천원이었으나 2006년에는 22,753천원으로서 4배 가량 증가하였다. 물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실질소득으로 환산하면 그 증가폭은 훨씬 줄어들 것이나 지속적인 증가경향은 부인할 수 없다.

문제는 평균적인 증가보다 각 어촌계별 소득불평등도가 심하다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어촌계의 소득이 저위에 있고, 최근 들어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한다. 소득 불평등도의 심화는 비단 어업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전반적인 소득 양극화 현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당연시하게 생각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어업은 근대적인 어업이 시행된 이후 2중구조를 벗어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고자 어촌계가 제도화되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불평등도의 심화는 어촌계의 설립 취지에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²⁾.

이런 점에서 본 고에서는 1986년과 2006년의 전국 어촌계의 호당 평균소득을 이용하여 어촌계의 소득 불평등도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으며, 20년 전과 2006년 현재의 소득 상위 어촌계와 하위 어촌계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분석하여 봄으로써 오늘날 어촌계의 현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계기로 삼았다. 이 연구는 어촌계원의 개별소득을 토대로 한 광범위한 연구가 아니라 어촌계별 평균소득을 중심으로 한 연구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한계를 지닐 수 있다. 또한 소득 불평등도의 원인

1) 1986년 1,520개이던 어촌계수는 2006년에는 1,969개로서 20년 동안 29.5%가 늘어났다.

2) 과거 수산청이나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촌계의 설립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어촌계 정관을 만들 때 표준정관을 사용하도록 권장하였다. 이는 어촌계의 설립목적을 충실히 따르기 위함으로서 2005년 7월 1일부로 전문 개정된 어촌계표준정관의 목적조항을 보면 “이 계는 어촌계원의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해양수산부고시 제39호)로 되어 있어 어촌계의 중요목적 중에 경제적 지위의 향상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에 대한 심층적 분석도 부족하기 때문에 결론 도출에 많은 제약을 지닐 수 있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현재 어촌사회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다소 비약적인 결론이라 할지라도 향후 어촌계 정책, 나아가서 어촌소득 정책의 한 부분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또 본 연구에서 분석된 결과는 비록 어촌소득정책과 관련된 한 편린에 불과하다하더라도 일천한 어촌사회연구의 후속연구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작은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II. 소득 불평등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불평등 척도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소득계층별 소득 점유율을 보여주는 소득 계층별 분포도이다. 즉 소득계층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별로 얼마만큼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척도는 소득분포에서 각 계층의 위치를 비교·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나 전체적으로 소득분배가 개선되었는지 악화되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소득의 불평등도를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는 불평등지수(Inequality Index)가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지수는 다시 실증적 척도와 규범적 척도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 척도인 지니계수(Gini coefficient)와 지니계수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수편차평균(MLD: Mean Log Deviation)이 사용되었다⁴⁾.

1. 로렌츠 곡선과 지니계수

로렌츠곡선은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곡선으로서 가로축에 인구 누적비율을, 세로축에 소득 누적비율을 나타낸다. 이때 모든 인구의 소득이 평등하여 동일하다면 인구누적비율과 소득누적비율은 일치할 것이므로 대각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득이 완전히 평등하지 않으므로 그 그래프는 대각선 밑으로 나타나게 된다. 즉 <그림 1>에서와 같이 대각선 밑의 곡선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 표에 의할 경우 전체 인구의 50%가 전체 소득의 20%를 차지하고 나머지 인구 50%가 나머지 소득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어촌계 소득은 수협중앙회에서 조사하여 매년 발표되는 것으로서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에 실려 있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어촌계원 평균소득은 어촌계 총유 의 어업권에서 얻는 소득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어업 및 어업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평균한 소득을 의미한다.

4) 실증적 척도는 절대 소득액으로써 불평등의 정도를 계측할 수 있으나 규범적 척도는 소득분배에 대한 사회적 가치판단을 고려하여 계측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후생함수와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규범적 척도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달튼의 평등지수, 아트킨슨지수 등이 있다. 나성린·전영섭, 「공공경제학」, 박영사, 2003. 2, pp. 40~47.

이러한 로렌츠 곡선을 수치화하여 값으로 나타낸 것이 지니계수이다. 즉 소득불평등 정도는 완전평등한 대각선과 대각선 밑의 곡선사이의 면적 부분이 되므로 이 면적을 구하여 전체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것이 된다. 이를 알기 쉽게 표현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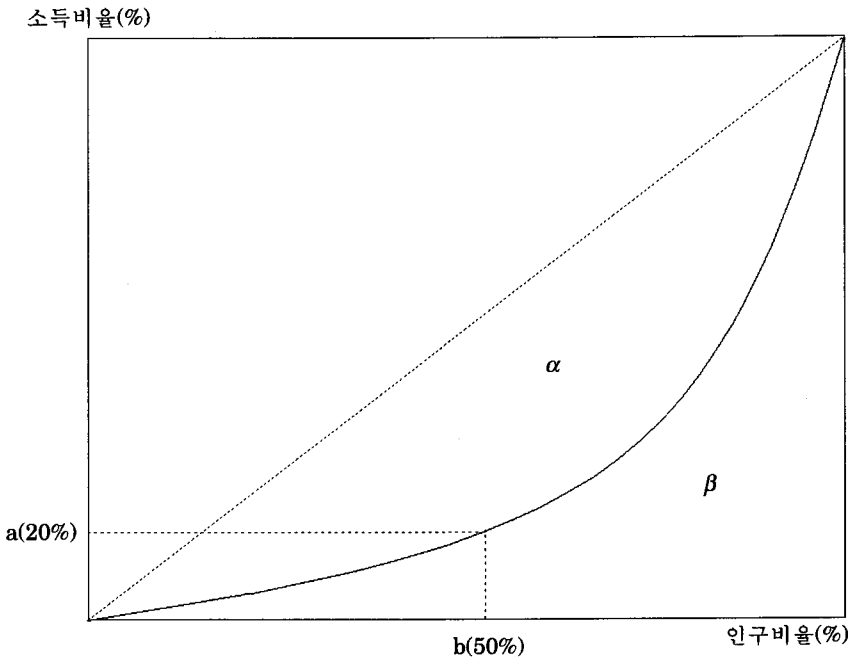
$$\text{지니계수}(G) = \frac{\alpha}{\alpha + \beta}$$

가 된다. 따라서 지니계수의 값은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며, 소득분포가 평등할수록 0에 가까워지고 불평등할수록 1에 가까워진다. 물론 완전 평등하다면 당연히 0이 된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간편하고 알기 쉽게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으나 다른 자료들보다 소득분포 중에서 중간계층의 분포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다(박준기 등, 2005).

한편 지니계수를 구하는 식은 다음 식(2.1)과 같다.

$$G = \frac{1}{\mu n^2} \sum_i \sum_j |y_i - y_j| \tag{2.1}$$

(y: 구성원 i의 소득, μ : 산술 평균, n: 개인의 합계인수)



< 그림 1 > 로렌츠곡선 모식도

2. 대수편차평균(MLD: Mean Log Deviation)

대수편차평균은 지니계수가 지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각 소득은 일반적으로 로그 정규 분포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자연대수로 전환된 소득에 대하여 그 편차를 평균한 수치로 계산한 것이다. 대수편차평균의 계산식은 식(2.2)와 같은데, 측정된 대수편차평균 역시 소득분배가 완전하게 평등할 경우 최저치가 0이 된다.

$$MLD = \ln \mu - \frac{1}{n} \sum_j \ln y_i \quad (2.2)$$

(y: 구성원 i의 소득, μ : 산술 평균, n: 개인의 합계인수)

한편 대수편차평균은 로그로 변환된 것이기 때문에 선형을 나타내며 소득 불평등도를 요인분해하는데 적합하며, 다른 지표들보다 소득분포에서 저소득계층의 분포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박준기 등, 2005).

III. 소득 불평등도 분석 결과

2006년 현재 우리나라 어촌계 수는 1,969개로서 1972년 제1차 어촌계 정비작업이 이루어진 이후 가장 많은 수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비교 연도가 되는 1986년의 어촌계 수는 1,520개로서 20년 동안 29.5%가 늘어났다. 이와 같은 어촌계 수의 증가는 한정된 어장에 대한 경합적 이용의 심화 현상을 불러 일으켜 소득 불평등도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이는 연안어업의 쇠퇴라는 어업 전반의 현상과 맞물려 어촌계가 연안어촌민의 소득 증대 및 복지어촌을 구현하고자 하는 어촌계 설립 취지에 크게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어촌계 평균 소득 분포 변화

1) 어촌계 평균 소득 기초 통계량

1986년경은 우리나라 수산업이 정점에서 있던 때라고 할 수 있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가장 왕성하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당시 어촌계 평균 소득은 5,395천원으로 제주가 6,088천원으로 가장 높았던 반면, 충남이 4,956천원으로 가장 낮았다(<표 1>). 소득 분포를 나타내는 변동계수를 보면 전국은 17.82인데 비해 경남이 26.42로 가장 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고, 부산이 7.15로 가장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최고소득 어촌계는 경남의 24,000천원이고 최저소득 어촌계는 경인지역의 3,390천원이다. 따라서 전국의 진폭계수는 6.08배로 나타났으며, 시도별로는 경남이 5.11배로 가장 컸고,

옥영수

〈표 1〉 어촌계 평균 소득에 대한 기초 통계량(1986)

구분	경인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산	제주	전국
평균(천원)	5,068	5,289	4,956	5,107	5,394	5,248	5,541	5,326	6,088	5,395
표준편차	932.7	913.8	466.8	690.0	760.3	701.3	1,464.2	380.9	1,043.3	961.1
최고값(천원)	7,816	7,450	6,150	6,800	9,984	8,500	24,000	5,980	9,500	24,000
최저값(천원)	3,390	3,600	4,187	3,400	3,610	4,105	3,930	4,700	4,156	3,390
변동계수(%)	18.40	17.28	9.42	13.51	14.09	13.36	26.42	7.15	17.14	17.82
진폭계수(배)	1.31	1.07	0.47	1.00	1.77	1.07	5.11	0.27	1.29	6.08
관측치(개)	76	61	69	52	748	134	272	23	85	1,520

주 : 변동계수=(표준편차/평균)×100, 진폭계수=[(최대값 - 최소값)/최소값]×100

부산은 0.27배로 가장 낮았다.

이에 비해 2006년의 경우 소득이 있는 관측대상 어촌계는 1,963개였는데, 평균 어촌계 소득은 22,818천원으로 나타났다(〈표 2〉). 이중 시도별로 보면 1986년과 달리 전남이 24,632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곳은 경북으로서 17,113천원에 불과했다. 소득의 분포를 나타내는 변동계수를 보면 전국이 32.87로서 1986년에 비해 명목소득은 모든 시도에서 크게 증가하였지만 그 분포의 정도는 1986년에 비해 두 배 가량 넓어졌다. 그 만큼 불평등도가 심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도별로는 충남이 49.71로 가장 넓은 분포를 보였으며, 전북이 13.22로 가장 고른 분포를 보였다. 최고 소득 어촌계는 전남의 114,365천원이었던데 비해, 최저소득 어촌계는 역시 전남의 714천원에 불과했다. 따라서 전국의 진폭계수는 무려 159.18배나 되어 1986년과는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그 차이가 커졌다. 또한 시도별로는 전남이 역시 159.18배로 가장 컸고, 전북이 0.75배로 가장 낮았다.

〈표 2〉 어촌계 평균 소득에 대한 기초 통계량(2006)

구분	경인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산	제주	전국
평균(천원)	24,336	23,274	20,813	18,610	24,632	17,113	21,788	23,193	24,484	22,818
표준편차	7,559	5,741	10,347	2,460	6,970	6,469	7,191	5,120	7,221	7,501
최고값(천원)	57,100	35,000	56,200	23,640	114,365	43,052	50,000	45,400	40,400	114,365
최저값(천원)	10,000	11,733	3,000	13,500	714	2,000	3,000	18,111	13,920	714
변동계수(%)	31.06	24.67	49.71	13.22	28.30	37.80	33.01	22.07	29.49	32.87
진폭계수(배)	4.71	1.98	17.73	0.75	159.18	20.53	15.67	1.51	1.90	159.18
관측치(개)	104	74	140	64	844	156	437	41	100	1,9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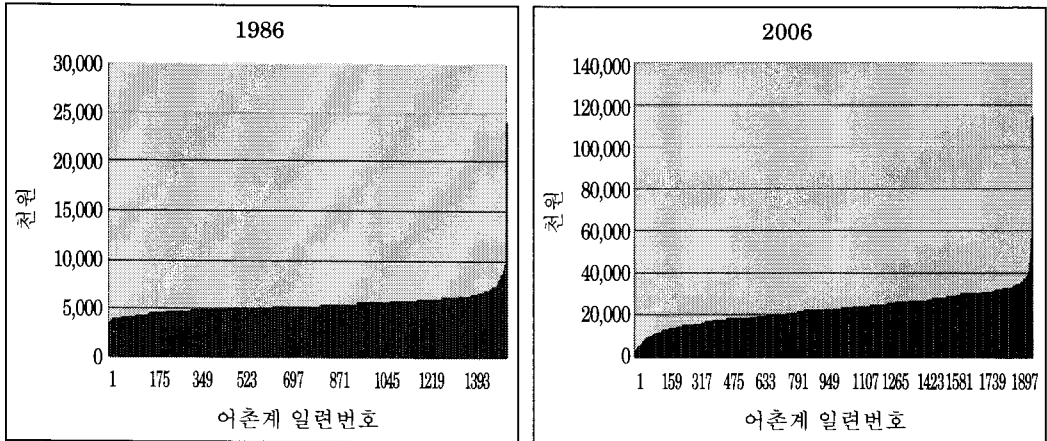
주 : 변동계수=(표준편차/평균)×100, 진폭계수=[(최대값 - 최소값)/최소값]×100

이를 통해 볼 때 20년 동안 어촌계 소득 변화가 가장 컸던 곳은 전남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반면 전북, 경북 등은 소득 변화가 가장 적었던 곳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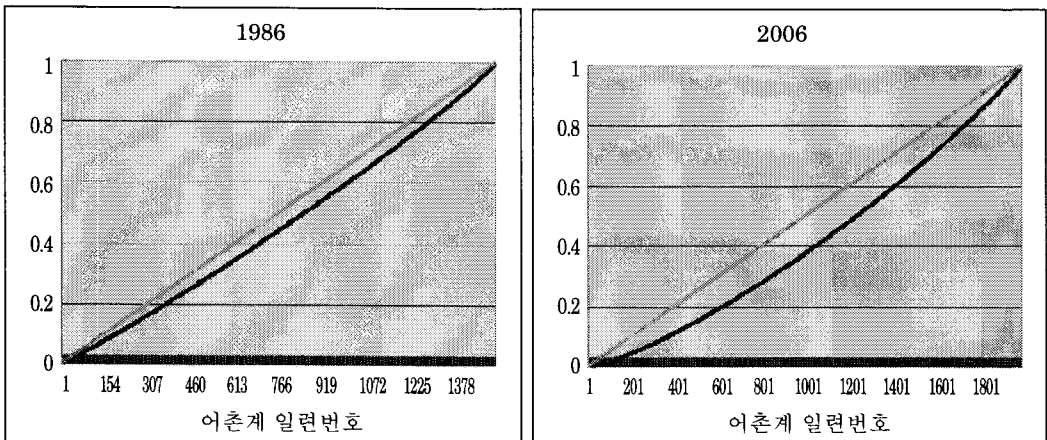
2) 어촌계 평균 소득분포 변화

앞의 기초 통계량 분석에 이어 본격적인 어촌계 평균 소득분포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체 어촌계의 단순한 소득분포도를 보면 <그림 2>와 같다. 이에 의하면 1986년에 비해 2006년의 소득분포가 훨씬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림 자체만으로는 언뜻 비슷한 듯 하지만 2006년의 계급단위가 훨씬 많고, 1986년의 경우 하위소득이나 최고 소득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이 비슷한 반면, 2006년에는 하위 소득이 0 가까이서 시작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2006년의 소득 분포가 훨씬 넓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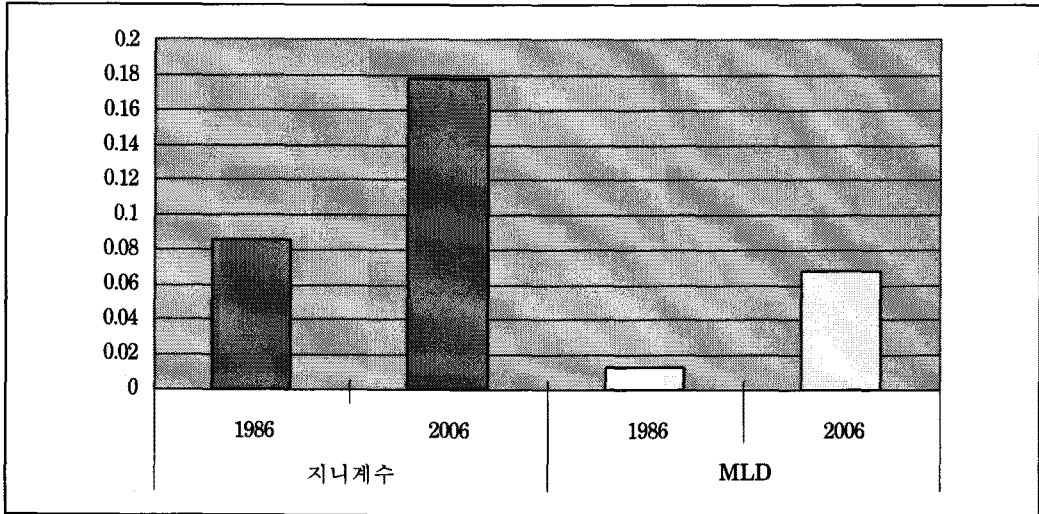
이를 로렌츠 곡선으로 환산해 보면 더 쉽게 알 수 있다. <그림 3>에서와 같이 2006년의 로렌츠 곡선이 1986년에 비해 훨씬 뚱뚱하기 때문에 불평등도가 더 심화되었다



<그림 2> 어촌계 평균 소득 분포 변화



<그림 3> 어촌계 평균 소득에 대한 로렌츠 곡선 변화



〈그림 4〉 어촌계 평균 소득에 대한 지니계수와 대수편차평균 변화

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이를 수치화하여 비교해 보면 〈그림 4〉와 같다. 이에 의하면 지니계수의 경우 1986년에는 0.0847이었으나 2006년에는 0.1770으로서 2.09배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 MLD의 경우 0.0125에서 0.0679로 5.43배 높아졌다. 이와 같이 MLD가 지니계수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그만큼 하위소득이 더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2. 시도별 어촌계 소득 격차 변화

어촌계 소득 격차 변화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이에 의하면 우선 지니계수의 경우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곳은 충남으로서 20년간 5.47배를 나타냈으며, 다음은 경북 2.94배, 부산 2.53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전북은 1.02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이 강원으로 1.46배를 보이고 있다.

또 대수편차평균(MLD)를 보면 전국평균이 5.43배로 지니계수의 2.09배보다 더 높은 격차를 나타내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하위 소득이 그만큼 더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시도별로 보면 변화 정도는 더 심하다. 즉 충남의 경우 40.33배, 경북은 10.29배, 부산 7.34배가 되어 지니계수보다 훨씬 정도가 심하다. 반면 변화가 적었던 전북은 0.92배, 강원 2.18배로서 지니계수와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낮은 정도를 보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충남과 경북의 경우 20년 동안 소득 자체는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덜 증가하였지만 어촌계별 소득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MLD가 크게 변함으로써 소득 열위 어촌계가 소득 상위 어촌계보다 상대적

〈표 3〉 지역별 어촌계 지니계수와 대수편차평균(MLD)의 변화 정도(1986 - 2006)

지역별	지니계수			MLD		
	1986년	2006년	배수	1986년	2006년	배수
경인	0.0999	0.1682	1.68	0.0163	0.0474	2.92
강원	0.0937	0.1367	1.46	0.0145	0.0316	2.18
충남	0.0510	0.2788	5.47	0.0042	0.1700	40.33
전북	0.0706	0.0719	1.02	0.0093	0.0085	0.92
전남	0.0729	0.1383	1.90	0.0091	0.0542	5.96
경북	0.0693	0.2035	2.94	0.0082	0.0839	10.29
경남	0.1040	0.1862	1.79	0.0212	0.0613	2.89
부산	0.0371	0.0940	2.53	0.0025	0.0183	7.34
제주	0.0885	0.1584	1.79	0.0134	0.0401	3.01
전국	0.0847	0.1770	2.09	0.0125	0.0679	5.43

으로 더 많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전북, 강원 등의 지역은 소득 자체도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덜 증가하였고 어촌계간 소득 격차도 그다지 심하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니계수와 MLD 모두 증가 배수가 적어 어촌계간 소득 격차는 그다지 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20년 동안 평균소득 변화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난 전남의 경우 지니계수가 1986년 0.0729에서 2006년 0.1383으로 1.9배 커진 것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 2.09배 보다는 격차가 다소 덜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MLD의 경우 5.96배로 나타나 동기간 전국 평균 5.43배보다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남이 어촌계 소득이 가장 크게 증대되었지만 하위 소득 어촌계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소득이 눈부시게 증대한 어촌계가 많이 존재하지만 도서, 벽지에 위치한 어촌계의 소득 정체 역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유추 해석할 수 있다.

3. 종사유형별 어촌계 소득 격차 변화

종사유형별 어촌계는 어선어업을 주로 하면 어선어업형, 양식어업을 주로 하면 양식어업형으로 분류하고, 어선어업과 양식어업을 병행하면 복합형 어촌계로 분류하고 있다. 종사유형별 어촌계의 변화는 지난 20년간 대체로 어선어업형으로 전환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동기간 중 어선어업형 어촌계와 복합형 어촌계 비율은 크게 늘어난 반면 증양식어업형 어촌계 비율은 낮아졌기 때문이다⁵⁾.

5) 1986년 어선어업형 어촌계는 349개로서 전체 어촌계 1,518개의 23.0%를 점하고 있었으나 2006년에는 530개로서 절대수도 늘어났지만 전체 어촌계 1,969개에 대한 점유비율도 26.9%로 높아졌다. 이에 비해 증양식어업형은 동기간 중 53.1%에서 42.5%로 낮아졌다.

종사유형별 어촌계의 소득격차 변화는 < 표 4 > 와 같은데 이에 의하면 지난 20년간 종사유형별로 지니계수 차이는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국 평균 지니계수가 1986년 0.0847에서 2006년 0.1770으로 2.09배 커졌는데, 증양식업형이나 어선어업형, 복합형 모두 비슷한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대수편차평균(MLD)의 변화는 종사유형별로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즉 전국평균이 동기간중 0.0125에서 0.0679로 5.42배 높아진데 비해 증양식업은 7.40배로 평균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복합형은 3.79배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지니계수 배수보다 대수편차평균 배수가 2.5배 정도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그만큼 하위 소득이 더 많아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종사유형별로 보면 증양식업의 배수가 평균보다 크게 높아졌다는 것은 증양식업형에서 하위소득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증양식의 경우 어촌계의 지리적, 해양적 조건이 구비되어야 양식적지가 되는 관계로 모든 어촌계에서 증양식을 통한 소득을 높이는 것은 그만큼 어려워 소득격차가 심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어선어업형은 일정한 자본 투하로 소형어선을 건조하기만 하면 합법이든 불법이든 조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선어업형 어촌계가 늘어나는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향후 어촌계 소득정책을 수립할 경우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표 4 > 종사유형별 어촌계 지니계수와 대수편차평균(MLD)의 변화 정도(1986 - 2006)

종사유형별	지니계수			MLD		
	1986년	2006년	배수	1986년	2006년	배수
증양식업	0.0815	0.1754	2.15	0.0111	0.0822	7.40
어선어업	0.0810	0.1748	2.16	0.0110	0.0548	4.98
복합형	0.0874	0.1773	2.03	0.0156	0.0590	3.79
전국	0.0847	0.1770	2.09	0.0125	0.0679	5.42

4. 입지유형별 어촌계 소득 격차 변화

입지유형은 어촌계가 입지하고 있는 환경에 따라 도시형, 도서벽지형, 연안촌락형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년간 입지유형별 어촌계 변화는 대체로 도시형으로 변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⁶⁾. 도시형으로의 전환의 이유로는 광역화한 행정구역의 변화와 더불어 교통의 발달로 도서, 벽지와 같은 취약지구의 감소를 들 수 있다.

입지유형별 소득 격차 변화는 < 표 5 > 와 같은데 지니계수의 경우 1986년에는 연안

6) 전체 어촌계중 가장 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는 것은 연안촌락형이다. 1986년 전체 어촌계의 67.7%를 점하고 있었으며 2006년에도 66.9%로 1986년에 비해 0.8% 포인트 떨어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 한편 도시근교형 어촌계는 1986년 12.4%에 불과하였으나 2006년에는 17.3%로 늘어났다. 또 도서벽지형(취약지구형)의 경우 1986년 20.0%에서 2006년에는 15.7%로 낮아졌다.

촌락형이 0.0852로 가장 높은 반면 도서벽지형이 0.0748로 가장 낮았으나 2006년에는 이와 반대로 도서벽지형이 0.2109로 가장 높은 반면 연안촌락이 0.1746으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는 도서벽지형의 배수가 2.82배인데 비해 연안촌락형이 2.05배로 전국평균 2.09와 큰 차이는 나지 않아 앞서 종사유형별과 비슷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입지유형별 소득 격차에 있어서도 종사유형별과 같이 대수편차평균의 변화 정도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그 중에서도 도서벽지형의 배수가 크게 나타났다. 즉 도서벽지형의 MLD는 1986년 0.0092로 지니계수와 마찬가지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2006년에는 0.117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을뿐 아니라 그 배수도 전국평균 5.42배보다 월등히 높은 12.69배가 되었다. 이는 도시형 3.73배, 연안촌락형 4.75배와 비교할 때 두드러지게 높은 배수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역시 도서벽지형에서 하위 소득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향후 소득정책에서 중요한 정책변수의 하나로 다루어야 함을 의미한다.

〈표 5〉 입지유형별 어촌계 지니계수와 대수편차평균(MLD)의 변화 정도(1986 - 2006)

입지유형별	지니계수			MLD		
	1986년	2006년	배수	1986년	2006년	배수
도시형	0.0792	0.1819	2.30	0.0110	0.0408	3.73
도서벽지형	0.0748	0.2109	2.82	0.0092	0.1173	12.69
연안촌락형	0.0852	0.1746	2.05	0.0132	0.0625	4.75
전국	0.0847	0.1770	2.09	0.0125	0.0679	5.42

5. 발전정도별 어촌계 소득 격차 변화

발전정도는 어촌계의 소득이나 생산기반 시설의 구비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는 것인데, 명칭과 분류기준이 시기에 따라 조금 상이하다. 즉 1987년 이전까지는 어가소득만으로 분류하였으며 소득이 높은 순서대로 복지, 자영, 자조 어촌계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 그 이후에는 어가소득 및 생산기반 시설 구비 정도에 따라 복지, 자립, 성장 어촌계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06년의 경우 어촌계 평균소득이 3,000만 원 미만이면 성장, 3,000~3,200만 원이면 자립, 3,200만 원 이상이면 복지어촌계 기준으로 삼았다. 이런 점에서 1986년과 2006년의 분류기준이 다소 상이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소득을 기준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발전정도별 소득격차 분석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발전정도별 소득격차 변화는 〈표 6〉과 같은데 지니계수의 경우 1986년에는 복지어촌계가 가장 높았으나 2006년에는 성장어촌계가 가장 높았다. 하지만 그 변화의 정도는 그렇게 심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동기간 동안 복지어촌계는 1.61배, 자립 어촌

게는 2.57배, 성장어촌계는 2.51배 변화하였다.

한편 대수편차평균의 경우 지니계수와 마찬가지로 1986년에는 복지어촌계가 가장 높았으나 2006년에는 성장어촌계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동기간 동안의 변화 배수는 지니계수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 즉 복지 어촌계는 2.47배로 지니계수와 비슷한 정도였으나 자립어촌계는 7.33배, 성장어촌계는 10.01배로 높아져 자립어촌계나 성장어촌계 모두 상대적으로 하위 소득 어촌계가 크게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발전정도별 어촌계 지니계수와 대수편차평균(MLD)의 변화 정도(1986 - 2006)

발전정도별	지니계수			MLD		
	1986년	2006년	배수	1986년	2006년	배수
복지	0.1013	0.1631	1.61	0.0196	0.0483	2.47
자립(자영)	0.0636	0.1632	2.57	0.0065	0.0479	7.33
성장(자조)	0.0678	0.1704	2.51	0.0073	0.0728	10.01
전국	0.0847	0.1770	2.09	0.0125	0.0679	5.42

IV. 상하위 소득 어촌계의 변화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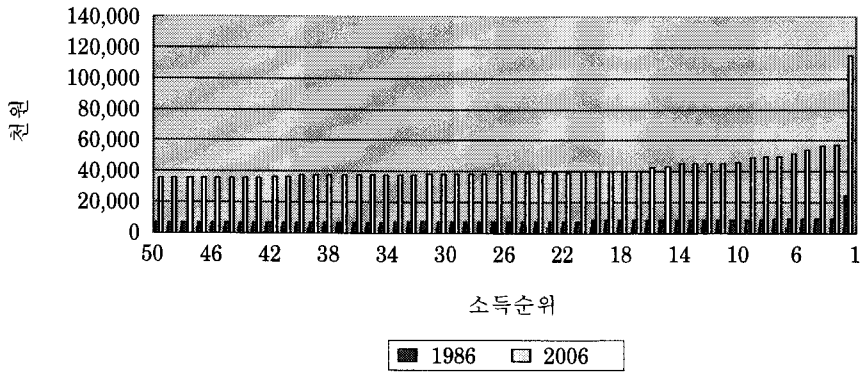
지난 20년간 어촌계간의 소득 불평등도는 매우 심해졌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또한 시도별, 종사유형별, 입지유형별, 발전정도별 소득 불평등도의 변화 정도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소득격차의 차이에 의한 불평등도의 심화는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심층분석이 시도되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 대신 소득 상위 및 하위 어촌계의 20년간 변화를 추적해 봄으로써 소득 불평등의 대략적인 원인을 인식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향후 소득 격차의 요인분석을 위한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 상위 소득 50개 어촌계의 변화 추이

상위 소득 50개 어촌계의 분포를 그려보면 〈그림 5〉와 같다. 이에 의하면 1986년의 경우 가장 소득이 높은 1개 어촌계를 제외하고 대체로 710만원~1,000만원으로 그 격차가 비슷하였으며 전국 평균치의 1.3~1.9배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가장 소득이 높은 어촌계는 경남 거제의 한 어촌계로서 소득이 2,400만원에 이르렀다.

한편 2006년의 경우에도 비슷한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데 가장 소득이 높은 1개 어촌계를 제외하고 대체로 3,600만원~5,700만원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치의 1.6~2.5배에 이르러 1986년보다 격차가 커졌다. 가장 소득이 높은 어촌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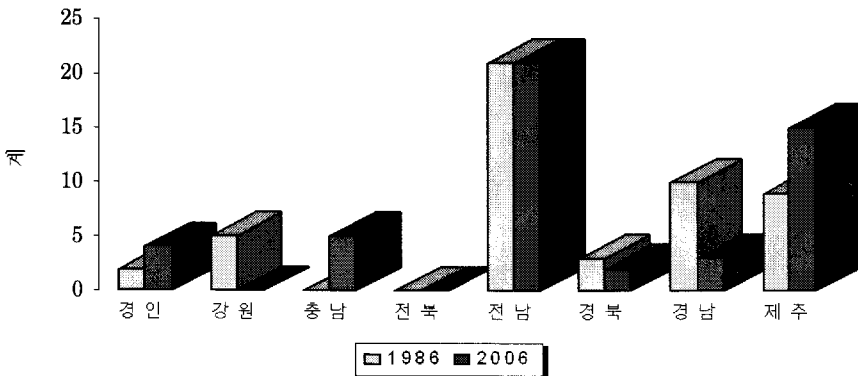
어촌계의 소득 격차와 변화에 관한 연구



〈그림 5〉 소득 상위 50개 어촌계 분포

전남 완도의 한 어촌계로서 평균소득이 1억원을 넘었으며 종사유형은 양식어업형이었다.

시도별 분포 변화를 보면 1986년에는 전남, 경남, 제주의 순을 보였으나 2006년에는 전남, 제주, 충남의 순을 보이고 있다. 20년간 증가율이 높은 곳은 충남, 경인(경기 및 인천), 제주를 꼽을 수 있고, 감소율이 높은 곳은 강원, 경남, 경북을 들 수 있다. 특히 충남은 1986년에는 한 곳도 없었으나 5개로 늘어났으며, 강원은 한 어촌계도 상위 50위에 들지 못했다. 또한 전북은 1986년과 2006년 모두 한 곳도 없었다(〈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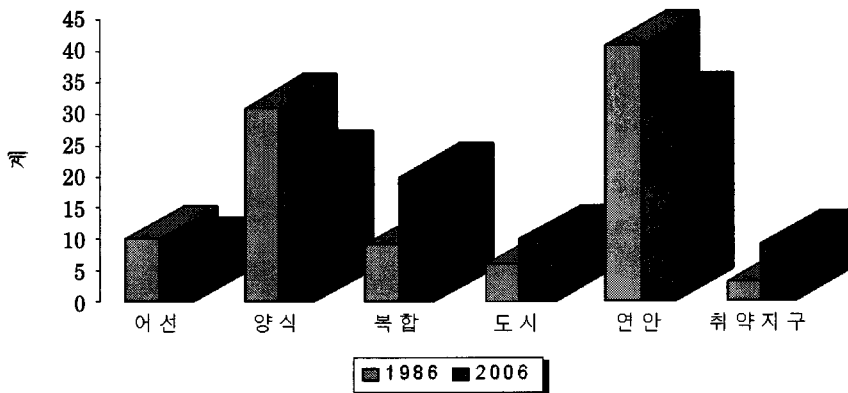


〈그림 6〉 소득 상위 50개 어촌계의 시도별 변천

종사유형별로 보면 1986년에는 양식어업이 31개로 전체의 62.0%를 점하였으며 그 외 어선어업이 10개로 20.0%, 복합형이 9개로 18.0%였는데 비해 2006년에는 양식어업이 22개 44.0%로 점유율이 다소 낮아진 대신 복합형이 20개 40.0%로 크게 높아졌다(〈그림 7〉). 이와 같이 복합형이 높아진 것은 같은 어촌계 내에 있어서도 어선어업과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계원이 혼재된 어촌계의 소득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어선어업이든 양식어업이든 전업자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입지유형별로 보면 1986년에는 연안촌락형이 41개로 대부분이었던데 비해 도시형과 취약지구형은 6개와 3개로 12.0%와 6.0%의 낮은 점유율을 보였다. 하지만 2006년에는 연안촌락형이 31개 62.0%로 점유율이 다소 낮아진 대신 도시형과 취약지구형은 10개와 9개로 20.0%와 18.0%의 다소 높아진 점유율을 보였다. 도시형의 점유율이 높아진 것은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 도시형으로 분류되는 어촌계가 많아진데도 한 원인이 있겠으나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어촌관광이 활성화되었던데 더 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취약지구의 비율이 높아진 것은 교통의 발달로 판매가 유리해진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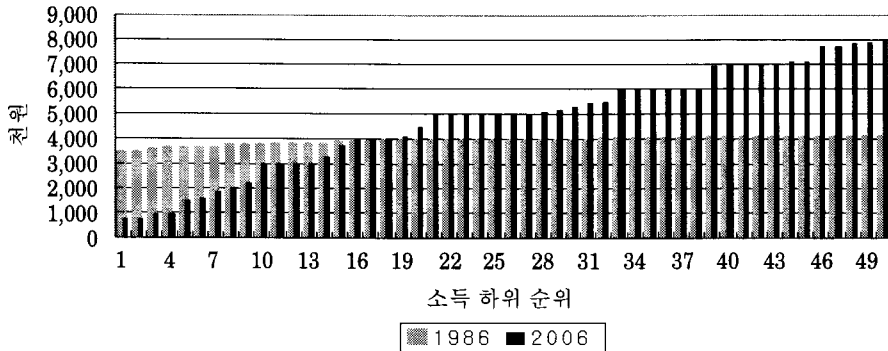
〈그림 7〉 소득 상위 50개 어촌계의 종사 및 입지유형별 변화

2. 하위 소득 50개 어촌계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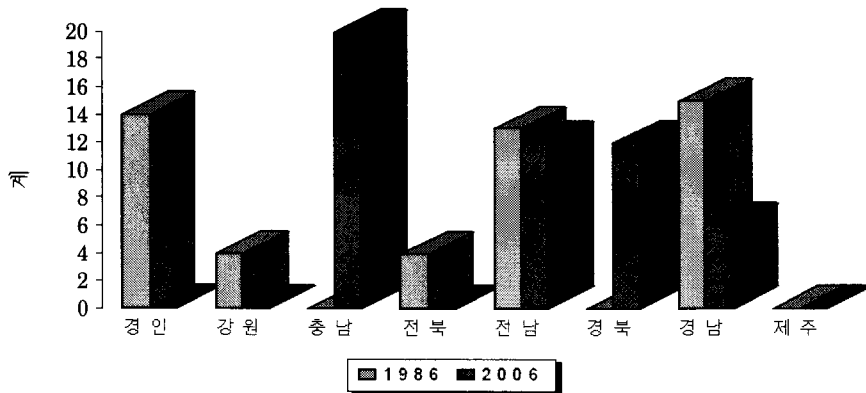
하위 소득 50개 어촌계의 분포를 그려보면 〈그림 8〉과 같다. 이에 의하면 상위 소득 50개 어촌계의 분포와 매우 다른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즉 1986년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소득이 낮은 어촌계라 하더라도 평균소득이 300~400만원을 보이고 있었으나 2006년에는 전국 최하위 평균소득은 100만원이 되지 않는 곳에서부터 800만 원가량까지 매우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상위 소득과 달리 하위 소득의 어촌계 일수록 소득 불평등이 그만큼 심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직접적인 지표가 된다. 더구나 2006년에는 소득이 없거나 파악되지 않는 어촌계도 14개나 있어 하위 소득 어촌계 일수록 소득 불평등도는 더욱 심해졌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여기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은 절대금액에 의한 비교임에도 불구하고 2006년의 소득 하위 어촌계의 평균소득이 1986년보다 크게 낮은 어촌계가 늘어나고,

어촌계의 소득 격차와 변화에 관한 연구



〈그림 8〉 어촌계 평균 소득 하위 50개 어촌계 분포



〈그림 9〉 소득 하위 50개 어촌계의 시도별 변천

심지어 소득이 없는 어촌계도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어촌계의 기능이 상실된 곳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⁷⁾.

소득 하위 50개 어촌계의 시도별 변천을 보면 시도별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우선 2006년의 소득 하위 어촌계는 충남이 20개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전남, 경북, 경남 순을 보이고 있다(〈그림 9〉). 이에 비해 경인, 강원, 전북, 제주는 한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어촌계는 1986년에는 제주를 제외하고 상당수의 어촌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2006년에는 한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외에 경남에서도 동기간 중 15개에서 6개로 줄어들어 큰 폭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 외 1986년과의 비교에서 특징적인 것으로는 충남과 경북의 경우 1986년에는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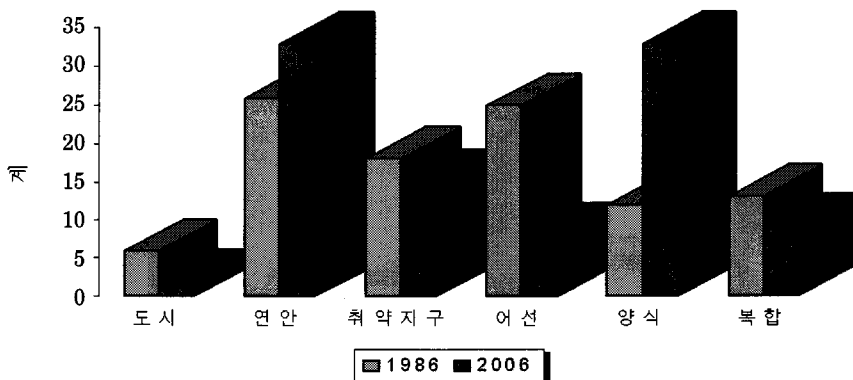
7) 어촌계가 설립될 때 어촌계의 기능은 국가의 사회보장적 기능, 어촌계에 대한 경제적 여건 조성기능에 두어졌다. 앞의 것은 우리나라 어업구조가 2중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 자본에 대항하여 다수의 연안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뒤의 것은 어촌계에 연안어장 이용권을 부여함으로써 경제적 여건 조성을 이루기 위한 것을 의미한다, 옥영수, “어촌의 구조변화와 향후 어업 및 어촌정책 방향”, 『해양수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 8. p.50.

개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에는 20개와 12개로 각각 40.0%, 24.0%를 점하여 시도별로 1,2위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20년 동안 최저소득 50개 어촌계의 변천을 보면 경인, 강원, 전북, 경남에서는 저소득어촌계의 감소가, 충남, 경북에서는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사유형별로 보면 양식어업형에서 크게 늘어난 반면 어선어업형과 복합어업형에서는 크게 감소하였다. 즉 양식어업형의 경우 1986년에는 12개로 전체의 24.0%에 불과하였으나 2006년에는 33개로 66.0%를 점해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고, 어선어업형은 25개에서 8개로, 복합어업형은 13개에서 9개로 크게 줄어들었다(〈그림 10〉).

이와 같이 양식어업형이 크게 늘어난 반면 어선어업형과 복합어업형이 줄어든 것은 소득상위 어촌계에서 양식어업형이 줄어든 반면 복합어업형이 늘어난 것과 비교할 때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즉 먼저 양식어업이 전반적으로 발전한 결과 소득 증가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이다. 그 결과 어촌계 소득을 끌어 올려 어촌계 간의 소득불균형을 완화시켰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복합형 어촌계의 약진이다. 즉 복합형 어촌계의 경우 소득 상위 어촌계가 크게 많아졌을 뿐 아니라 소득 하위 어촌계도 크게 줄어들었다. 따라서 향후 어촌계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단일 어업보다는 어촌계 소득을 고루 올릴 수 있는 다양화 전략이 어촌 소득 증대 및 어촌개발의 한 고려사항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입지유형별로 보면 전체 구성비율은 1986년과 비슷하나 수에 있어서는 변화가 있었다. 즉 연안촌락형이 1986년에 이어 2006년에도 가장 많았으나 그 수는 더 늘어나 33개로 전체의 66.0%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취락지구는 18개에서 15개로 다소 줄어들었다. 이에 비해 도시근교형은 6개로 1986년에도 가장 적었으나 2006년에는 2개로 더욱 줄어들었다.



〈그림 10〉 소득 하위 50개 어촌계의 종사 및 입지유형별 변천

이와 같이 도시 및 취약지구의 하위 소득 어촌계수가 줄어 든 것은 앞서 살펴본 상위 소득 어촌계수가 도시 및 취약지구에서 증가한 것과 연관시켜 볼때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즉 도시형 어촌계의 경우 어촌관광 등의 활성화로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졌을 수 있고, 취약지구의 경우 다른 조건은 열악하지만 양식지로서의 적지가 많아 양식어업에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최상하위 10개 어촌계의 변화 추이

1986년에 있어서 상하위 어촌계의 소득변화 과정을 추적 관찰해 보는 것은 어촌계의 구조변화를 적출해 보는데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1986년 어촌계 평균 소득이 최상하위에 해당하는 10위까지의 20년 동안의 변화를 추적해 보았다.

먼저 1986년의 경우 전국 최고소득을 올렸던 최상위 10개 어촌계가 2006년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표 7>과 같다. 이에 의하면 당시 최상위 어촌계는 제주가 4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남 3개, 전남 3개였으며, 종사유형은 양식어업형이 8개로 압도적이었다. 그 외 복합형과 어선어업형이 각각 1개에 그쳤다. 입지유형별로는 9개가 연안촌락형이었으며 도시형이 1개였다.

이들 전국 최상위 소득 어촌계의 20년 후의 모습은 대체로 소득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어촌계가 20년 후에도 소득 10위에 포함된 어촌계는 한 곳도 없었으며, 50위 이내가 겨우 3개, 상위 10% 이내에도 겨우 5개에 불과하였다. 나머지 5개 어촌계는 놀랍게도 상위 50~90%의 저소득 어촌계에 포함되었으며 그중 전남의 한 어촌계는 2006년 소득순위 1808위로서 상위 90% 이하, 즉 하위 10% 이내의 최하위 어촌계에 해당하게 되었다. 또 1986년 전국 최고 소득치를 보였던 경남 거제의 한 어

< 표 7 > 1986년 최상위소득 10개 어촌계의 2006년 변화 모습

시도	어촌계	종사유형	입지유형	2006년 소득순위	비 고		
					상위 10%이내	상위 50-90%	상위 90% 이하
경남	A	복합	연안	1252위		○	
전남	B	양식	연안	1808위			○
경남	C	양식	도시	1252위		○	
제주	D	양식	연안	35위	○		
전남	E	양식	연안	164위	○		
제주	F	양식	연안	32위	○		
전남	G	양식	연안	1065위		○	
제주	H	양식	연안	17위	○		
경남	I	어선	연안	1224위		○	
제주	J	양식	연안	52위	○		

층계는 2006년 상위 50% 밖으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1986년 전국 최하위소득 10개 어촌계의 2006년도 변화모습은 <표 8>과 같다. 이에 의하면 1986년 전국 최저소득 10개 어촌계에는 경인지역과 전남이 3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강원과 전북이 각각 2개소였다. 종사유형별로는 어선어업형이 5개, 양식어업형이 4개, 복합형이 1개였으며, 입지유형별로는 도서벽지형이 5개, 연안촌락형이 3개, 도시형이 2개였다. 최하위소득 어촌계는 최상위 어촌계가 종사유형 및 입지유형에서 일정한 특성을 보인데 비해 비교적 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어촌계의 20년 후의 소득순위는 최상위 소득군과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즉 6개의 어촌계가 비록 그렇게 높은 순위라고는 할 수 없지만 상위 50~80% 소득순위에 속하게 되었고, 2개는 오히려 상위 20%에 속하는 고소득 어촌계로 탈바꿈하였다. 나머지 1개의 어촌계는 상위 80~90%에 속하기는 하였으나 최하위 소득계층은 벗어나 있었다. 특히 주목할 것으로는 1986년 전국 최하 소득치를 보였던 경인지역 강화의 한 어촌계는 2006년에는 소득순위 267위로서 상위 20%에 포함되는 약진을 보였다. 이상을 종합해 볼때 결론적으로 1986년 최하위 10개 어촌계는 20년 후 상위 내지는 중간 계층 정도의 어촌계로 탈바꿈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정책함의

이상의 분석과정에서 지난 20여 년간 어촌 소득 불평등도는 매우 심화된 것을 살펴 보았다. 또한 지니계수를 통해 단순한 소득 불평등도도 심화되었지만 대수편차평균을 통해 저소득어촌의 소득불평등도가 더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사실은 상하

<표 8> 1986년 최하위소득 10개 어촌계의 2006년 변화 모습

시도	어촌계	종사유형	입지유형	2006년 소득순위	비 고		
					상위 20%	상위 50-80%	상위 80-90%
경인	A	어선	연안	267위	○		
전북	B	어선	벽지	1049위		○	
전북	C	어선	벽지	1063위		○	
강원	D	어선	연안	1667위			○
전남	E	양식	벽지	1252위		○	
경인	F	양식	도시	245위	○		
전남	G	양식	연안	1065위		○	
경인	H	어선	벽지	1252위		○	
전남	I	양식	벽지	1331위		○	
강원	J	복합	도시	없어짐	-	-	

위 50개 소득 어촌계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소득 불평등도의 심화는 일반적으로 어촌 소득이 열위에 있다고 하는 것과는 다소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즉 전체적인 평균소득은 농촌이나 도시근로자가구에 비해 상대적인 열세를 보이지만 어촌 자체의 절대소득 금액은 증가하였으며⁸⁾, 개별 어촌계에 따라서는 상당한 고수익을 얻는 어촌계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어촌소득이 열위에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며, 고수익 어촌계의 평균소득에 대한 비율은 20년 전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어촌계 소득 불평등 심화의 원인은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분석되지는 못했지만 그동안의 어촌정책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70년대의 성장정책이 1980년대와 90년대를 통해 그대로 답습되었다는 것이다. 즉 어선어업의 경우 대형화 및 고마력화를 통한 어획량 증대에 정책의 중심이 맞추어졌으며, 이는 자연히 근해어업으로 정책기조가 치중되는 결과를 야기하여 한정된 자원을 두고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은 많은 마찰을 빚게 되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어획노력량 증가에 의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감척사업이 추진되기는 하였으나 이 역시 근해어업 중심으로 추진되어 연안어업과 마찰을 빚게 되었다⁹⁾. 또한 양식어업에 있어서도 1980년대 이후 개인면허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관계로 다수 어업인의 공동이용을 통한 소득향상을 기치로 삼았던 공동어업권이나 마을어업권은 축소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결국 어선어업이나 양식어업 모두 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한 성장정책이 정책기조가 되었으며, 이것이 어촌계 소득 불평등의 한 원인이 되었다.

두 번째는 어촌계 정책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어촌사회학적으로 볼 때 어업공동체 해체의 일반적 조건은 노동생산력 증대에 따른 사회적 분업의 전개라고 볼 수 있다(옥영수, 1984).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나라 연안 어촌은 급격한 사회적 분업화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어촌계 정책은 1960년대 처음 어촌계가 설립된 때와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따라서 어촌계는 정책소외 분야로서 개별 어촌계의 역량에 따라 고소득 어촌계로 변화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30, 40년 전의 형해화(形骸化)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세 번째는 어장이용질서의 혼란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양식어업은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중요한 축으로 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식어업에 의한 과실은 일부 개인양식업자에게 귀속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 어촌계에 의

8) 농촌 또는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불평등도와와의 상대비교는 본 논문에서 시도되지 못했다. 이는 추후 후속연구에 기대하여야 할 것이다.

9) 서론에서 언급하기도 했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어촌계 소득에는 어업 소득 외에 어업의 소득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촌계 소득 불평등의 원인으로서는 어업전체의 기조를 제시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를 지닐 수 있다.

한 공동체적 운영이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화 과정에서 어촌계의 본래 기능을 상실한 형해화된 어촌계로서는 직접적인 양식어업 경영보다는 행사계약으로 불로소득만 얻고자 하는 경향이 만연하였다. 이는 결국 양식어업의 건전한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지만 어촌계의 육성에도 많은 독소요인이 되고 있다(육영수, 2004).

이상의 사실들을 통해 향후 어촌소득 정책에서 취해야 할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 첫 번째가 어촌조직의 개편이다. 현재 전국의 어촌계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안어장 행사계약에 의한 불로소득을 얻고자 하는 경향때문으로서 어촌계의 건전한 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 따라서 연안어촌의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고 연령구성도 노령화되고 있는 추세를 동시에 고려할 때 향후 어촌조직은 보다 광역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어촌계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늘날 협동조합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구별수협¹⁰⁾의 대체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광역화의 규모는 현재 계원 기준으로 500~1,000명이 되도록 하며, 그 경우 전국적으로는 150~300개의 어촌계가 존립하게 된다¹⁰⁾.

두 번째는 어촌계의 법인화를 들 수 있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광역화한 어촌계가 설립될 경우 어촌계의 독립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법인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어촌계에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며, 각종 정책자금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용을 유도할 수 있다. 이는 과거 법인어촌계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지구별수협과의 갈등으로 인해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새롭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당시의 지구별수협과 현재의 지구별수협의 역할이 크게 달라졌음을 고려할 때 활기찬 미래의 어촌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의 하나가 된다.

세 번째는 어장 이용제도의 개선이다. 원래 어업권은 소유보다 이용개념이 중시되었다. 그러한 일환으로 도입된 법 취지가 어장에서의 총유(總有) 개념의 도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의 과정에서 어촌계 정책이 부재한 틈을 타 연안어촌에서는 비계원의 어장 이용, 어장의 행사계약, 심지어는 빈매(濱賣)¹¹⁾ 현상까지 크게 성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어장이용제도의 무질서는 어업자원의 황폐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어촌계원의 합리적 소득 획득의 기회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향후

10) 이 역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촌계 소득 불평등 심화의 원인으로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분석되지는 않았다. 어촌계 소득 불평등 심화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인 바, 이에 대해서도 후속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11) 공동이용을 전제로 면허된 마을어장(과거의 공동어장) 등의 채취권을 일괄하여 특정 업자에게 파는 것으로서 채취권을 획득한 업자는 잠수부 등을 이용하여 어장 내의 모든 이용가능한 생산물을 채취해 버림으로써 어업자원을 고갈시켜 버린다. 이런 점 때문에 과거 어업정책에서 크게 문제가 되었으나 현재는 정책에서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농업에서 말하는 밭떼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연안어장은 소유와 이용권의 철저한 분리가 요구된다. 면허주체는 지구별 수협 또는 광역화한 어촌계가 되되, 이용권은 전체 계원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다만 전체 계원에 의한 공동이용은 전근대적인 이용방법이므로 실제로는 계원간 경쟁을 통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이 경우 형평성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두 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촌계 운용 개선으로서 어촌계장과 임원들의 임기 단축을 들 수 있다. 현재 어촌계장 임기는 4년, 감사는 3년으로 되어있으나 이는 자칫 어촌계 운용의 나태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긴 임기제도를 둔 것은 어촌계원들의 노령화를 반영하여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하고 임원 선출을 둘러싼 계원간의 불협화음을 줄인다는 취지였으나, 오히려 행사계약의 만연, 각종 기금이용을 둘러싼 계원간의 마찰 등 부작용의 소지만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어촌계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투명한 어촌계 운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촌계 임원 임기를 보다 단축하여야 할 것이다.

옥영수

참고문헌

- 나성린·전영섭, 공공경제학, 박영사, 2001, pp. 41 - 47.
- 박준기 등, “농가소득 불평등도의 요인분해”, 농촌경제, 제27권 제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겨울호. pp. 15 - 27.
- _____, 저소득농가의 농가경제 실태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pp. 5 - 15.
- 옥영수, 어촌계 어류양식업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 pp. 22 - 41.
- _____, “어촌의 구조변화와 향후 어업 및 어촌정책 방향”, 해양수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 pp. 46 - 67.
- _____, 공동어장의 합리적 이용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4, pp. 4 - 22.
- 이동필 등, 도농간 소득 및 발전 격차의 실태와 원인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pp. 22 - 45.
- 최정윤, “어촌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관한 조사연구”, 해양문화연구, 제1권, 부산수산대학, 1985, pp. 1 - 35.

A Study on the Income Inequality among the Fishing Communities in Korea

Ock, Young-Soo

Abstract

The Fishing Communities (so-called Uchongae) in Korea was legally established in 1962. It has been gradually expanded by quantity, and we have total 1,969 communities in 2006. The major establishment purpose of Uchongae was put 2 functions. The first function is to make up the double industry structure in coastal region, and second function is to make economical condition for Uchongae.

Nevertheless the Fishing Communities System in Korea was not successfully developed after first beginning. The Income gap have become heavily between fishing area and non-fishing area, including agricultural area. The income gap has been due to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in Korea. And the income gap even have become heavily among Uchongaes.

In this paper, It have been researched the degree of Income inequality among Uchongaes in Korea during 1986 - 2006. The income inequality degree was analyzed by Gini coefficient and Mean Log Deviation (MLD) using Lorenz Curve. According to analysis result, the Gini coefficient of Uchongaes in Korea has been about 2-times high from 0.0847 to 0.1770 during 20 years. And the MLD has been 5.4 times from 0.0125 to 0.0679 during same periods. This means to more wide the general Income Inequality among the Uchongaes in Korea. Especially, It means to more wide the gap of high ranking Uchongaes and low ranking Uchongaes that MLD index multiplier has been more high.

key words : Fishing community, Income Inequality, Lorenz Curve, Gini coefficient, Mean Log Deviation